

의안번호	제618호
의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356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7년 5월 3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618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5월 31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18년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충주세계소방관 경기대회추진단(한시기구) 설치 및 내수면 분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(안 제2조)

- 총 정원 : 3,363명 → 3,378명 (+15)
- 집행기관의 정원 : 1,564명 → 1,574명 (+10)
- 소방공무원 정원 : 1,686명 → 1,691명 (+ 5)

-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(안 별표 2)

구 분	소방정이상	소방령	소방경	소방위	소방장	소방교	소방사
현 행	2% 이내	3% 이내	10% 이내	9% 이내	15% 이내	31% 이내	30% 이상
개 정	2% 이내	4% 이내	10% 이내	9% 이내	15% 이내	31% 이내	29% 이상

-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 3)

- 일반직 : 1,438명 → 1,448명 (+10명)
 - ▶ 4급(+1명), 5급(+1명), 6급(+4명), 7급(+3명), 8급(+1명)
- 소방직 : 1,686명 → 1,691명 (+5명)
 - ▶ 소방정(+1명), 소방령이하(+4명)

- 한시정원 :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 (+8명)

- 일반직(3명) : 행정5급1, 행정6급1, 행정7급1,
- 소방직(5명) : 소방정1, 소방령2, 소방경1, 소방위1

3. 의안전문 : 붙 임

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붙 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6. 비용추계서 : 붙 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,363명”을 “3,378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564명”을 “1,574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1,686명”을 “1,691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직급정원) 별표의 본청정원 중 8명(5급1, 6급1, 7급1, 소방정1, 소방령이하4)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정원에 관한 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 · 9급	전문경력관
비 율	6% 이내	18% 이내	33% 이내	34% 이내	7.5% 이상	1.5% 이내

2. 연구직 · 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20% 이내	80% 이상	26% 이내	74% 이상

3. 소방직공무원

구 分	소방정이상	소방령	소방경	소방위	소방장	소방교	소방사
비 율	2% 이내	4% 이내	10% 이내	9% 이내	15% 이내	31% 이내	29% 이상

4. 별정직공무원

구 分	4급상당 이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34% 이내	26% 이내	10% 이내	10% 이내	18% 이내	2% 이상

*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직급별	기관별	총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출장소
총 계	3,378			-			
정무직 계	1	1					
도지사	1	1					
일반직 계	1,448			-			
1~2급	1						1
2~3급	2	1	1				
3급	9	7		1			1
3~4급	2	2					
4급	67	42	7	5	7	7	6
5급이하 소계	1,349			-			
전문경력관 소계	18			-			
별정직 계	12			-			
1급 상당	1	1					
4급 상당	3	3	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8						
연구직 계	157			-			
연구관	30	1		27	2		
연구사	127			-			
지도직 계	26			-			
지도관	6			6			
지도사	20			-			
소방직 계	1,691			-			
소방정	18	6		12			
소방령이하	1,673			-			
교육공무원 계	43			-			
총장	1			1			
교수·부교수· 조교수전임강사	30			30			
조교	12			-			

※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,363명 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564명 2.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 공무원의 정원 : 1,686명 3. ~ 4. (생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3,378명</u> -----. 1. ----- 1,574명 2. ----- ----- <u>1,691명</u> 3. ~ 4.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-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~ 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- 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 2. 본청 ·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 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-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 · 도의 5급 이하(시 · 군 · 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~ ⑤ (생략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

1. 개정사유

-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(한시기구) 설치 및 내수면 분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2. 비용 발생 요인

-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- 정원조정 내역 (안 제2조)
 - 총정원 : 3,363명 → 3,378명 (+15명)

4. 비용 추계결과

- 재정수반요인 :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
- 추계의 전제 : 증원 +15명
- 추계 결과 : 인건비 6,195백만원 정도 추가 소요
- 재원조달방안 : 도비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 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7년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	5차년도 (2021년)
공무원 인건비	6,195,039	738,640	1,304,227	1,343,354	1,383,654	1,425,164

※ 매년 임금인상률 3%(예상치) 적용 계산

6. 작성자 :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유건상